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행령 [별표 1]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기관 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계약에 의한 모든 차입자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 ~ 3. 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⑦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외)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15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 중 “경우를”을 “경우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제4항에서 제9항”으  
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  
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  
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법·시행령 및 이 규정 위  
반에 따른 조치를 제외한다)

제2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4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3호 및 제4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

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에 있는자.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

제22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7-53호”를 “2017-1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동산업

제22조의3제1항제3호 중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가.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가목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24조제1항제2호 중 “자기자본”을 “분기말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와 제1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를 같은 조 제1항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의4제6항제1호의 문구는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2. 영 제11조의4제6항제2호의 문구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
2.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을 주간사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별표 7 I. 2.나.<예시> 제10항 단서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2년)”으로 한다.

별표 7 I. 2.나.<부실징후예시> 제3항 본문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로 한다.

별표9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9. 이 규정 시행(2014.2.14.) 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

가.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과 이 규정 <별표 9>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과징금부과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조정(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후 과징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하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금액	감경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3초과 100분의 5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0
-----------------	-----------------

(3)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 (검사종료후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시정정도 및 시정시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면기준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과징금 부과 면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감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말한다. 다만 예금담보차입금과 같이 자기자금에 의하여 즉시상환이 가능한 차입자금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

----. <후단 삭제>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3. 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삭 제>

합)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⑦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⑧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외)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⑨·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⑦·⑧ (생략)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금  
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  
-----  
-----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④ (생략)

⑤ 제14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 ⑦ (생략)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 ③ (생략)

④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법·시행령 및 이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제외한다)

2. (생략)

를 --.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4조 제4항에서 제9항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법·시행령 및 이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제2호나목에서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  
-----  
-----  
-----  
-----.

1.(현행과 같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3. -----  
-----  
----- 부동산임대업은 -----  
-----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 신

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가.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신용공여 총액의 10  
0분의 5 또는 300억(자기  
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  
억원) 중 적은 금액

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  
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  
서 가목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  
액

② (생략)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  
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예금·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  
금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  
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③ (생략)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분기말 자기자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 9. (생략)
- ②·③ (생략)

제35조의4(광고사항 등)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략)
- <신설>

-----  
-----  
----- 법 제18조의2제1항

제1호와 제18조의2제2항제1호-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광고사항 등)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 제11조의4제6항제1호의 문구는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 2. 영 제11조의4제6항제2호의

문구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 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로 한다.

<신 설>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기준
2.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별표7> -----

1. -----



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 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1.~8. (생략)

<신 설>

-----  
-----  
-----  
-----  
-----  
-----

<별표9>

1.~8. (현행과 같음)

9. 이 규정 시행(2014.2.14.) 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

가.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이 규정 <별표 9> 제 1호에서 제7호까지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당시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조정(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후 과징금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범  
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5이하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한다. 단, 대주주에 대  
한 신용공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금액	감정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3 초과 100분의 5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70

(3)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위  
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전(검사종료후 3개월 이내  
로 한정한다.)까지 시정한 경우  
에는 시정정도 및 시정시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면  
한다.

시정범 위	시정시점	감면기준	
		신용공여한 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전부시정 ( 한도초 과 전액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과징금 부과 면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일부시정 ( 한도초과 액의 50% 이상 해소)	감독당국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감독당국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감경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감경